11장 · 정미경 노무사

건설노동자

1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의 이해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공사의 대부분은 소위 십장·오야지 등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단계 하도급 체계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면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은 직접시공을 하거나 기능인력을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공사수주로 인한 이익만 향유할 수 있으나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은 입찰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가수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처럼 다단계 하도급 하에서는 단계가 거듭될수록 인건비가 대폭 줄어들고 안전관리·책임시공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공사할 수 있는 오야지 등의 존재를 적법하게 허용하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초 시공참여자 제도는 1996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다수 당사자가 참여한 공사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책임시공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참여자 제도는 다단계하도급을 건설업의 관행으로 만들어 저임금·고강도의 노동을 합법화시켰고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주장되면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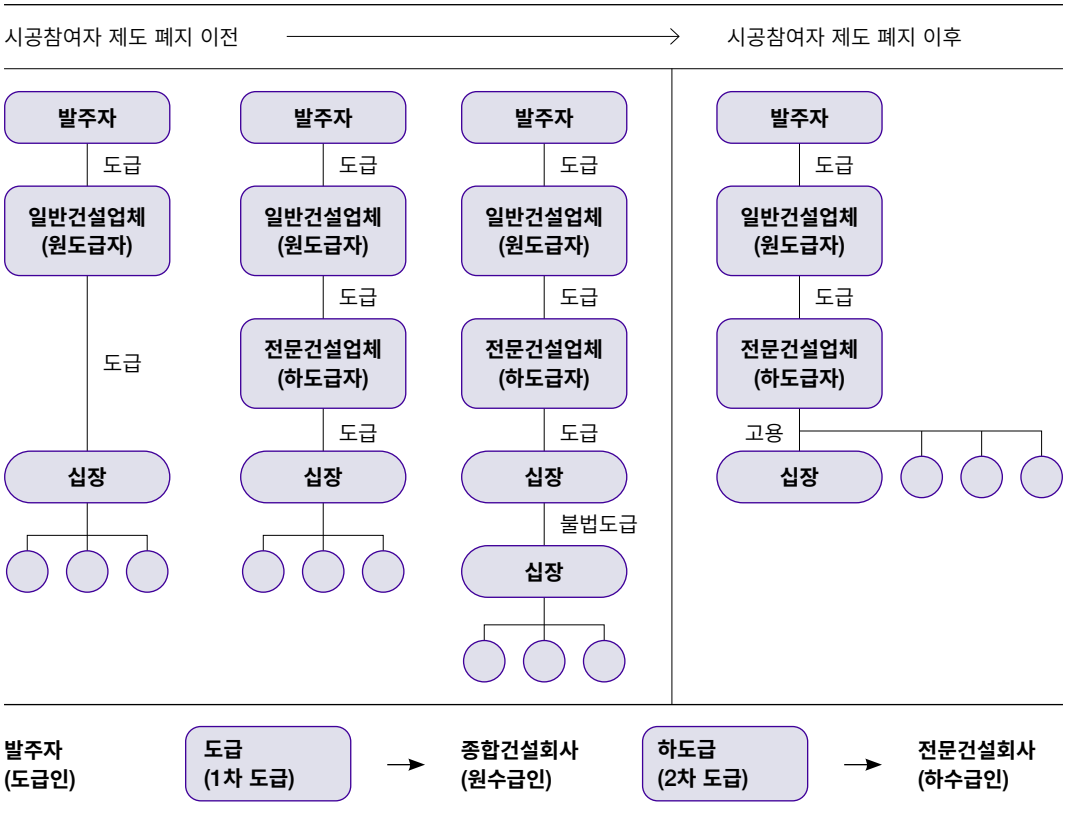

그림1 건설현장 하도급 구조

2단계를 넘어서는 하도급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건설회사인 원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불법재하도급 여부를 관리하고 재하도급 계약을 변경·해지하지 않는 경우 그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재하도급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이하 생략)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영 별표 1에 따른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교량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 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불법하도급의 형태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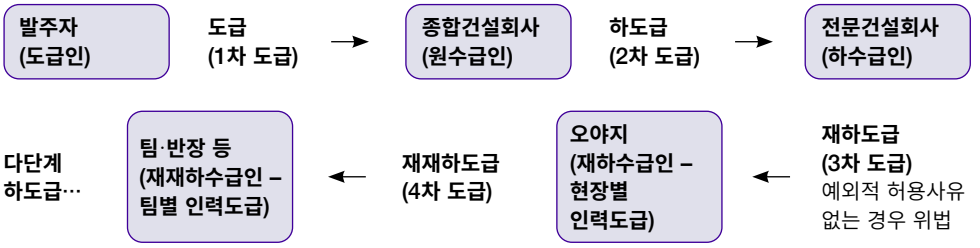

그림2 불법하도급의 형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재하도급은 신기술 도입이나 특허권 이용을 위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건설근로자의 노동력만 제공받는 '인력도급'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도급'은 소위 오야지가 전문건설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다음 그들의 임금을 임의로 책정하며, 전문건설업체는 이들의 근무일수에 따른 총 일급의 액수로 도급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오야지는 공사의 품질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이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일급에서 개인의 이익을 얻게 되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강도의 노동을 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또, 상시고용이 어려운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근로자는 다음 현장의 취업을 틀어쥐고 있는 오야지의 이익창출을 위하여 이러한 고강도·고위험의 노동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3) 불법하도급 발견 시 대응방법

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하는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는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원수급인이 이러한 하수급에 대한 불법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과 동일하게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이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해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불법하도급 발견 시 조치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임금이 체불된 건설근로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법하도급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 또는 검찰에 불법하도급 관련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조기에 해결되기 위한 사업주 압박의 수단이 되는 동시에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가) 불법하도급 증명자료

공사현장명, 공사현장 주소, 발주처, 도급인(시행사, 종합건설업체), 수급인(전문건설업체), 오야지 성명·연락처·주소 등 가능한 자세한 현장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또, 작업일보(데쓰라), 임금을 입금한 계좌내역·입금자명,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나) 불법하도급 증명내용

상담자나 건설근로자 입장에서는 수급인·하수급인·오야지 간의 자세한 도급계약 체결내용을 문서로써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에 대한 기소율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하도급의 정황증거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야지'가 고용한 건설근로자들의 모든 임금을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도급비'명목으로 대신 지급받아 '오야지'가 책정한 일급에 따라 직접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총 임금 이외의 나머지 도급비를 오야지가 자신의 수익으로 귀속시켰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 건설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와 해고의 문제

(1) 일용근로계약

건설현장 미숙련근로자들은 대부분 '인력업체'를 통해 일일단위로 새로운 건설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2) 기간제근로계약

건설업은 해당 공정을 완료하여 완성물을 인도하는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공정이 완료되는 때까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측에서 '일용근로계약서' 내지 '1개월 단위 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이나 해고 관련 사건에서 이를 번복해야 하는 등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해고의 문제

① 일용근로계약 체결 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1일 단위로 여러현장에서 입·퇴사를 반복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습니다.

②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경우에는 관할 지방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매우 중요한 증명자료가 됩니다.

가) 1개월 단위로 갱신한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 경과한 때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고된 근로자가 일하는 공정이 실제로 1개월 이상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어온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 간의

의사는 해당 공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계속근로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공란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은 기재되어 있으나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프로젝트 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우며, 통상 해당 공정의 완료일까지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 현장소장·공무담당자 등의 경우

현장소장이나 공무담당자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에게 직접 고용되어 해당 현장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근무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때에는 근로자의 이직을 위한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르면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유보임금 등 임금체불 구제방법

(1) 임금지급원칙의 적용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통화불·직접불·정기불 지급의 원칙은 건설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용이 가능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최소한 1개월 단위로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체는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오야지·팀장 등에게 '도급비' 명목으로 총 임금을 지급하며, 이를 오야지 등이 개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오야지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직접불'원칙에 반하므로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체는 오야지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더라도 다시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의 지급부담이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A

Q. 건설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건설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취지가 1주간의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는 것에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제 근로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424, 1997. 4. 2). 다만, 고용노동부는 1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근로기준과-4532, 2004. 8. 30).

Q. 일당으로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계약해서 이미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A. 포괄임금제란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을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총 임금액에 미리 포함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업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정된 직종은 아니므로 포괄임금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포괄임금지침을 폐기하지 않고 있어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향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 또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판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2) 유보임금의 문제

① 정기불 원칙 위반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유보임금'이 문제가 됩니다. 일명 '쓰메끼리'라고 하는데, 건설공사의 인건비는 하수급인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산정내역을 수급인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은 이를 자신의 근로자들의 임금산정 내역과 함께 발주처에 제출합니다. 발주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와 일급 등을 확인하여 수급인에게 도급비를 지급하고, 수급인이 다시 하수급인에게 하수급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이 개별 근로자들에게 각각의 임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다단계 불법하도급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복잡한 체계로 임금이 지급되므로 개별근로자의 손에 임금이 들어올 때까지 1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건설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달 돌아오는 대출금이나 공과금, 교육비 등의 지출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Q&A

Q. 저희 현장은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다음 달 15일에 지급합니다. 저는 임금지급일 15일 이전인 3일에 입사하였는데 회사에서 다음 달 15일이 되어야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A. 임금지급일이 매월 15일이고, 임금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사업장에서 임금의 정기지급일 이전(당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익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첫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정기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이때 회사는 당월 3일~당월 15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당월에 일부 지급하고 다음 달 정기지급일에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정기불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② 노동청 진정사건 진행 시 유의점

1개월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조차 유보임금을 당연시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3개월

이후에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마치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보임금은 대표적으로 건설현장의 오래된 병폐 중 하나인데 건설근로자 또한 불안정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임금이 늦게 지급되는 것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유보임금이 계속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건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도 임금을 제때 지급하려는 시스템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며, 건설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의 생활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반드시 근로감독에게 '정기불 원칙'을 주지시키고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의 경과를 모니터링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임금체불 시 구제신청절차

① 임금지급 연대책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다단계 불법하도급 구조 하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오야지 등)에 의한 임의적 미지급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야지 등은 자신이 꾸린 팀원들의 인건비에서 수익을 얻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도급을 준 하수급인이 도급비 지급을 지체하거나 자신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임금지급을 회피합니다. 반면, 건설근로자는 다음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오야지에게 임금지급을 촉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2~3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무면허 건설업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도급비 지급을 지체한 건설업 면허를 가진 직상수급인이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체불의 경우

일반적인 도급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직상 수급인'이란 자신에게 도급을 준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하는데, 1차례 도급의 경우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도급인(발주자)'을 말하며, 2차례 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수급인'을 말합니다. 연대책임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사용자인 하수급인이나 그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 모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나) 불법하도급의 경우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 중 건설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무면허 건설업자(하수급인)에 하도급을 준 경우 그가 임금을 체불한 때에는 면허를 가진 직상수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야지 등 무면허 건설업자에 대한 불법하도급으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특례조항입니다. 직상수급인은 도급비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불법하도급 관리의무를 위반한 수급인에 대한 간접적 제재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직상수급인은 오야지 등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인건비를 포함한 도급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중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사용자인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발주자 → **원수급인 (종합건설)** → **하수급인 (전문건설)*** → **오야지 (무면허)** → **팀장 (무면허)**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최하위의 직상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에게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함.

그림3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예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임금의 직접지급 사유**1) 고용노동부,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 2008. 1.**

직상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완화시켜 본래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하도급비를 그의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직접 지급해줄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불법하도급이 행해졌는지, 직상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실무상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직불합의서'작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임금을 직접지급 할 수 있는 사유는 1)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불에 대해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임금체불 사실을 알리고 직상수급인의 파산 등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란 자재비, 인건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금액에 한하며, 이보다 체불된 임금액수가 더 많더라도 위의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직상수급인이 지급 거부 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만이 가능하며, 실무상 근로자는 먼저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명령 등 소를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도급비를 압류하는 방식 등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5. 24.〉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Q&A

Q. 건설업자가 건설업 면허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건설업 등록을 마친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는 대부분 건설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는 '대한건설협회'홈페이지 업체정보 검색에서, 전문건설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홈페이지 업체정보 검색에서 대표자명이나 회사명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 현장은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시켰는데 이 경우에도 수급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문언 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중에 그러한 건설사업자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른 연대책임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므로, 불법적인 하도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직상수급인은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법제처 17-0663, 2018. 1. 22).

② 임금체불 구제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

가) 임금체불 관련 자료

건설업 임금체불은 다단계하도급 구조하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 단계별 건설사업주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작업일보(일명 '데쓰라')에 표시된 근무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하수급업체는 매일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 일급의 결정도 오야지에게 많은 재량이 부여되므로 하수급업체로서는 오야지가 기재하여 제출하는 작업일보와 일급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간혹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오야지의 수익을 확보해주기 위해 오야지와 개별 근로자가 공모하여 상담자에게 근무일수나 일급을 부풀려 진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 확보해야 하는 기초자료

- 체불된 공사현장의 주소: 노동청 진정제기 시 관할의 기준(무면허 건설사업자의 자택주소가 밝혀지는 경우 그의 주소로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음)
- 발주처 / 수급인(종합건설업체) /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 / 중간 무면허 건설업자 등 모든 사업주체의 상호명(성명)·주소(사무실, 자택)·연락처 등 가능한 자세한 인적사항: 노동청 진정제기 및 고소절차 진행 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 파악
- 작업일보(데쓰라), 작업일보가 없는 경우 근무한 날을 체크한 달력, 수첩 등, 일급 확인을 위한 진술·임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 체불된 임금액수 산정
- 오야지의 도급비 수령 방법 및 개별 근로자 임금지급 경로 파악: 오야지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도급비를 지급받아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지 또는 오야지 또한 자신의 근무일수만큼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오야지의 근로자성 파악)

나) 내용증명 발송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사무실이나 자택 주소를 알고 있다면 체불된 임금의 액수와 기간 등을 상세히 적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사업주의 지급을 강제하거나 재신을 압류할 수 있는 효과는 없으나 시일이 많이 지나게 되면 체불관련 사실관계가 흐트러지고 증거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법률상 대리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심리적인 독촉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임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소송까지 진행될 사건의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노동청 진정사건 진행 시 유의점

가) 체불사업주 및 직상수급인 인적사항 파악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업주 뿐만 아니라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려면 공사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진정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수급인 종합건설업체에 관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홈페이지-업체정보에서,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체에 관한 사항은 '대한전문건설협회'홈페이지-업체정보를 통하여 정확한 대표자명과 법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면허 건설업자인 오야지에 대해서만 사업주로서 조사하고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연대책임 부담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나) 오야지의 근로자성 문제

보통 오야지·팀장 등으로 불리는 무면허 건설업자가 자신의 팀을 꾸려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체나 다른 오야지로부터 '인력도급'을 받고, 팀원들의 일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거나(일명 '수꾸미') 도급비에서 인건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을 자신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주로서 지위가 인정됩니다. 반면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력도급의 형태로 취업을 하였을 뿐 자신이 근무한 일수에 일급을 곱한 임금만 지급받는 오야지의 경우 자신이 제공한 근로 이상의 수익을 얻지 못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 불법하도급 정황이 발견된 경우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임금 연대책임' 관련 지침에서,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불법하도급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다보면 수급인부터 무면허 건설업자까지 다단계 하도급 관계자들의 인적사항과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불법하도급의 정황을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다단계하도급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근로감독관이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까지 협의할 의욕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 지침을 근거로 업무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업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

가) 6개월 이상 사업 가동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되었을 것'이 요구되나, 건설업의 경우 무면허 건설업자의 사업가동기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임금채권보장법은 불법하도급으로 임금이 체불되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무면허 건설업자(오야지)의 사업가동기간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면허를 가진 직상수급인의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사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의 경우 프로젝트 산업의 특성상 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가동하다가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사업이 휴지기를 갖고 다시 새로운 공사를 도급받는 형태가 반복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에도 계속된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 중 휴지기를 뺀 기간을 사업가동기간으로 보고 6개월 이상의 사업 가동 여부를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 업무 처리요령, 2007. 6).

관련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4. 9. 24., 2015. 6. 15., 2021. 10. 14.〉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 10. 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라 한다)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④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 10. 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⑤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항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1. 10. 14.〉

(4) 공공발주공사 임금직불제2)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2020. 7. 10.

국가·지방자치단체·일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2019. 6. 19.부터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이란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정해진 명목의 대금을 다른 명목으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개별 근로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를 등록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들의 근무일수와 일급을 정리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면 발주자는 공사대금과 구분된 임금전용계좌에 임금을 입금하고 하수급인은 임금전용계좌에서 임금명목으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의 경우에는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⑥ 법 제34조제9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Q&A

Q. 임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의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급여를 타인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하수급인이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그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발주자에게 청구하거나 위임장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타인계좌 등록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5)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시 구제방법

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가) 제도의 내용

저가낙찰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도, 유동성 악화 등으로 건설기계의 임대료를 체불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운전원의 임대료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구제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로 하여금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보증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가 체불된 경우 공제조합에서 건설기계 임대인에게 체불된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보증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임대하는 각각의 개별 건설기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졌으나 2019. 6. 19.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1개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의 임대료를 1장의 보증서로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건설사업자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보증서를 신청하여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보증서를 제출받은 건설사업자는 지급보증서 발급 사실 및 보증내용 등을 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 공제조합은 해당현장에서 제출된 건설기계임대계약서에 따라 보증채권자(체불된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확정한 건에 한해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건설기계 임대인(건설기계운전원)은 반드시 '건설기계임대계약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2019. 4. 30.〉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적용제외

아래와 같이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별' 지급보증 대신 '대여계약별' 지급보증이 가능하며,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 임대료 체불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6. 19.〉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다) 보증금액

현장별 보증되는 건설기계 임대료의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구분	보증금액
공사기간 4월 이하	공사계약금액×업종별 건설기계비율-대여계약 선급금 합계
공사기간 4월 초과	$\frac{\text{공사계약금액}\times\text{업종별 건설기계비율-대여계약 선급금 합계}}{\text{공사기간(월)}} \times 4$

표1 건설기계 임대료 보증금액

관련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④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이후 이에 대응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공사계약금액} \times \text{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 - \text{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건설기계 대여금액 -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Q&A

Q. 현장에 굴삭기를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기계를 빌리기로 한 업체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A.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나 이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지급보증서를 게시하지 않아 건설기계 임대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청에 이를 알리고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발주자 임대료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수급인(종합건설업체)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이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직접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발주자와 수급인·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임대료를 직접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4 건설근로자의 휴업수당 [3]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2007

(1) 휴업수당 발생 사유 –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건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802, 2010. 2. 16).

① 기상악화로 인한 휴업

우천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공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경우

사용자의 공정관리 미흡으로 자재가 늦게 들어오거나 해당 공정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공정이 일시적으로 정지(소위 '대마'가 난 경우)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 도중에 휴업이 발생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해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자재수급 불가, 공정의 일시정지 등)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된 경우 휴업시작 이전까지 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휴업시작 이후부터 퇴근 시간까지 휴업한 부분은 받기로 한 일당의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휴업시작 이전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시간급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 – 일용근로 도중에 휴업이 발생한 경우 임금 및 휴업수당 산정

1일당을 10만원으로 책정하고, 근로시간을 07:00~17:00(휴게 2시간)로 정했을 때, 07:00~15:00까지 근무하다가 공정이 일시정지된 경우 07:00~15:00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7시간(휴게1시간)분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15:00~17:00 1시간(휴게시간 1시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시급: 100,000원 ÷ 8시간 = 12,500원
- 7시간분의 임금: 12,500원 × 7시간 = 87,500원
- 1시간분의 휴업수당: (12,500 × 1시간) × 0.7 = 8,750원
- 총 수령액: 87,500원 + 8,750원 = 96,250원

(3) 휴업 중 다른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휴업 발생시 건설근로자가 그 휴업기간 동안 다른 현장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다른 현장에서 임금을 받은 때에 해당 임금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 중 중간수입공제에 대해서 명확한 행정해석은 없으나, 판례나 행정해석은 부당해고시 임금상당액 산정에 있어 중간수입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 7. 14). 따라서 부당해고시

중간수입공제와 마찬가지로 휴업 중 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근로하여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만큼은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판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의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4)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 시[4] 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2020.2.

① 공사의 정지 및 기간 연장

건설현장은 옥외근로의 특성 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다수 근로자의 감염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현장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따라 '전염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휴업사유에 따른 휴업수당 등 지급[5]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021. 3. 31.

가)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아니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에 한함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4인 가구 127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표2 코로나19 확진시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른 입원·격리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사업주가 선제적으로 코로나19의 확신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거나 그 밖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

(1) 건설근로자 소득세 및 4대보험 부과기준

구분		근로자	사업주	비고
소득세	갑근세	6%	—	1일 결정세액 = 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 산출세액: (일급-15만원**6) 비과세 근로소득**)×6% 근로소득세액: 산출세액×55%
	주민세	갑근세×10%	—	
건강보험	건강보험	3.495%	3.495%	총 6.99%(2022. 1.부터 적용)
	장기요양	근로자 50%부담	사업주 50%부담	(건강보험료 × 12.27%(2022. 1.부터 적용)
국민연금		4.5%	4.5%	총 9% 기준소득월액상한: 524만원(2021. 7. 1. ~ 2022. 6. 30.)
고용보험		0.9%	0.9%+α	실업급여: 총 1.8%(2022. 7.부터 적용), *65세 이후 납부X)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		—	건설업 3.6%	사업주 전액 부담(2022. 1.부터 적용)

① **소득세**

동일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내로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보다 저임금을 받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상정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며, 산정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매달 임금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 – 일용근로자 1일 소득세액 산정방법

- 산출세액{(일당-15만원)×6%}-근로소득세액(산출세액×55%) ⇒ (일당-15만원)×2.7%
- 산정예시) 일당 2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20만원-15만원)}×0.06(1-0.55)=1,350원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

②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개선에 따른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2018. 8.**

건설근로자의 경우 종래에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1개월에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직종 근로자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 시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데 반해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20일 이상의 근무를 요구함으로써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처리 지침으로 차별대우를 해왔던 것인데, 2018. 1.부터 이러한 지침을 폐기하고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가) 명시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제 근무한 일수와 상관 없이 최초고용일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나) 명시적인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월에 가입대상이 되며, 근무일수가 8일 미만으로 되는 경우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 보험료 산정: 건설근로자의 경우 타 직종 근로자와 달리 매달 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변동되는 보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Q&A

Q. 저는 일하던 현장에서 공정상 휴업이 발생하여 다른 현장에서도 잠깐 일을 했는데 두 현장 다 8일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두 현장 모두에서 납부해야 되나요?

A. 양쪽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각각의 현장에서 일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2) 건설공사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① 사후정산제도의 의의

저가 수주 경쟁 속에서 보험료가 낙찰률에 연동되면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되어왔습니다. 이에 2006. 12. 29.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주의 4대보험 납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후정산 절차

먼저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이 건설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급인(종합건설업체)에 제출하면 수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납부영수증과 합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발주자는 공사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에 초과지급된 보험료를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수급업체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4대보험료 납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은 가입회피를 위한 변명일 뿐이므로 사후정산제도를 근거로 적극적인 가입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3) 건설기계근로자와 고용보험[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마련, 2021. 6. 1. / [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021. 2. 15.

① 적용범위

건설기계 운전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지만 실제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일을 한다는 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서 2021. 7. 1.부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7개종 운전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 건설기계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Q&A

Q. 저는 건설현장에서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 상 규정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살수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살수차나 스카이 크레인처럼 실제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사용되지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건설기계 운전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보장됩니다. 따라서 보험률이 일반직종보다 낮은 1.4%이며, 종사자와 사용자가 각각 0.7%씩 부담합니다.

Q. 저는 건설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는데 매월 여러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은 어느 현장에서 가입해야 하나요?

A.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장 가입자격의 이중취득을 인정하므로, 각각의 현장에서 일한 일수만큼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모든 현장에서 실직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관련 법률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③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와 그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② 보험료 부과기준

가) 보험률과 보수액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보험률이 일반직종보다 낮은 1.4%이며, 종사자와 사용자가 각각 0.7%씩 부담합니다. 한편,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보수를 알기 어려운 경우

신규 입직자 등 소득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준보수는 월 133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구직급여 하한액 79.8만원(기준보수의 60% 수준)입니다. 또, 수차례 도급 등으로 소득 확정이 어려운 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주의 경우 소득파악체계구축 완비 전까지 한시적으로 '직종별 기준보수'를 적용합니다.

관련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④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실업급여 지급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달리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정당한 이직 사유에 추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직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직하는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 요구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2021년 기준 월 200만원이고, 출산전후를 통틀어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4)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시 구제방법

①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가)고용보험·산재보험

건설업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하수급인이 가입주체를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으로 하는 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까지 사업장 가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재해근로자가 해당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발생한 재해임이 증명되기만 한다면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나)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청구(익명으로 제3자도 청구 가능,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하거나 사업장가입자의 '자격확인청구(개인 공인인증서 필요)'가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공단에 적극적으로 사업장 미가입 사실을 알려 실태조사를 청구하고 사업장 가입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여전히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 시 가입자와 그의 피부양자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제한기간 동안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됩니다. 또,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제1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10] 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10)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②보험료 원천공제 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가) 보험공단의 체납절차

사업주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관련 보험공단에 알려 적극적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국세청의 전산을 확인하여 소득세가 납부되었으나 4대보험이 미납된 경우를 적발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고발

사업주가 사회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경우 이 금원은 오로지 사회보험료 납부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관하던 중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액수와 가해액수가 금액적으로 정확히 일치해야 하므로 원천공제된 액수와 미납된 액수를 철저히 조사하여 경찰에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판례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다) 수시로 가입 및 보험료 납입 여부 확인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납입하지 않는 사업주들은 이미 다른 현장에서도 체납된 보험료가 수억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수시로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입현황을 확인하여 미납 시 사용자에게 즉시납입을 촉구하여 장기미납의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4대보험료 미납 시 구제절차에 필요한 자료**

현장명·수급인 법인명·하수급인 법인명,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임금을 지급받은 계좌내역, 임금지급명세서(원천공제 내역), 소득세 납부내역(국세청 홈텍스), 4대보험 납부내역(4대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등

6 건설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적용범위

종래에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사업자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2017. 1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개정으로 2018. 7. 1. 부터는 모든 공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별'로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 건의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현장별로 사업장 가입과 탈퇴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므로 모든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일괄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이 되면 한번의 사업장 가입으로 보험가입자 번호가 생성되고 공사가 새로 발주되고 완료될 때마다 신고만 하면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 보험가입자(사업주)

① 하도급 공사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오야지-건설근로자'와 같이 2차례 이상의 도급 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이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과 오야지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자신이 보험가입자 자격을 승계하는 '사업주인정승인'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② 발주자 직영 공사

커피숍 리모델링과 같이 개인이 발주하여 직접 건설근로자를 불러 공사하는 경우 개인 발주자가 보험가입자로서 산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발주하고 이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1차 도급, 발주자-수급인)을 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가입자로서 산재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3) 근골격계질환 관련 특별제도

① 특별진찰제도[11] 근로복지공단, 산재 결정 전 특별진찰 진행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2018. 8. 10.

가) 제도의 의의

특별진찰제도란 건설업 근로자와 같이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때 업무관련성이 높고,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의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기 전이라도 특별진찰을 실시하고 그 치료비를 산재보험급여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는 비용부담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질병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7조(진찰 요구 대상 등)

① 법 제119조에 따라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2. 장해등급 또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
3.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4.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5.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② 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진찰비용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특별진찰제도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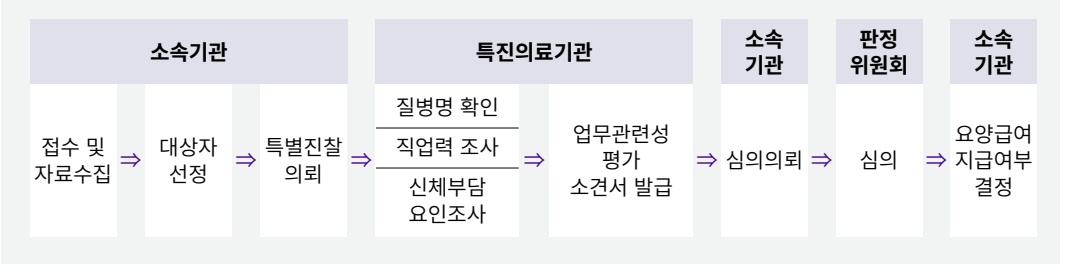

그림4 특별진찰제도 진행 절차

ⅰ) 건설업 근로자는 회전근개파열, 요추추간판탈출증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업력과 작업내용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상재해 관련 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ⅱ) 공단에서 직업력과 업무내역 등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으로 특별진찰을 요청합니다.

ⅲ)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에서는 직업력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이 상당한 질병의 경우 정형외과·직업환경의학과·재활의학과 등 다학제 진료를 통한 특별진찰을 실시합니다.

ⅳ) 작업현장조사를 통해 신체부담요인을 조사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를 발급합니다. 특히, 건설업, 음식 및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용접공에 대하여는 직업환경전문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진행됩니다.

ⅴ)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를 첨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특별진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업무상재해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직업력 관련 입증자료로 고용보험 가입내역, 임금 입금받은 내역, 퇴직공제부금 가입이력 등

다) 치료비용 인정기간

치료비용은 현금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를 통한 현물로 제공됩니다. ⅰ)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에 따른 진찰 종료일까지 치료비가 인정되며, 투약처방이 진찰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추가 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ⅱ)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결과 업무 부담요인이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날까지의 치료비용이 인정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이후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Q&A

Q. 저는 2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목수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병진단일: 17. 8. 5., 요양급여신청일: 18. 7. 25., 특별진찰 실시일: 18. 8. 1.
- 진단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A. 건설업 근로자로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하였으므로 20년간의 직업력만 증명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 산하 병원에 특별진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진단일로부터 특별진찰 실시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이 지급되고, 만약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업무부담 요인이 '매우높음'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는 날까지 특별진찰 치료비용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② **추정의 원칙**[12] **근로복지공단,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6대상병 재해조사 요령, 2019.7.**

가) 추정의 원칙의 의의

추정의 원칙이란 근골격계 질환 발생빈도가 높은 일부 직종과 상병에 대하여 해당 직업력 등이 충족되는 경우 작업현장 조사 등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 산재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업무 및 질병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진단명, 직종(성별포함), 직력, 유효기간(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날부터 최초 상병 진단일까지의 기간)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경추추간판탈출증·회전근개파열·요추추간판탈출증·반월상연골파열·수근관증후군에 대하여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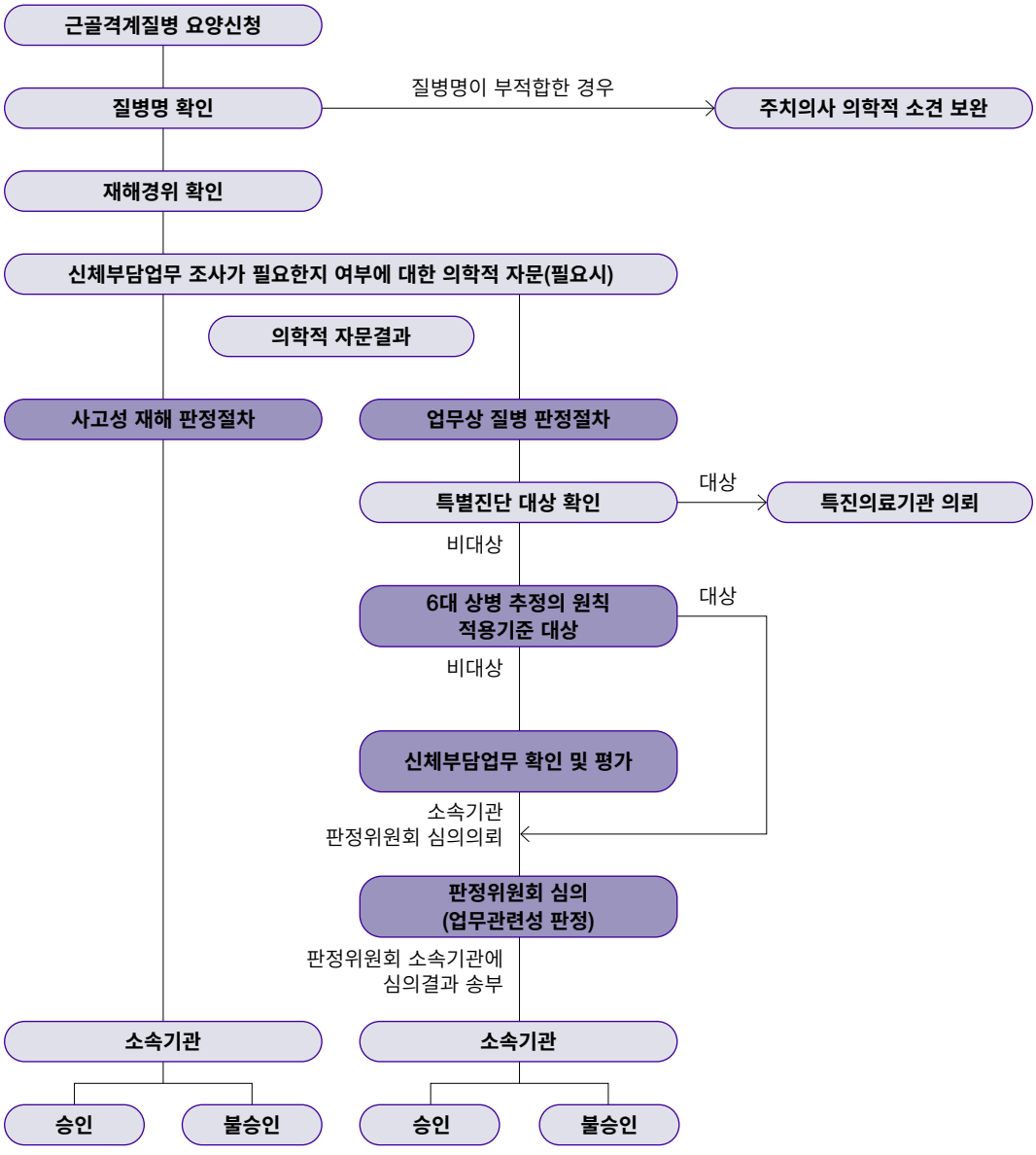

그림5 근골격계질병 조사 및 판정절차

(4) 건설기계 운전원의 산재 적용[13] 고용노동부, 건설기계 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신고 관련 Q&A

①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 건설기계

종래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에 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27개 건설기계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Tip.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건설기계

1. 불도저 2. 굴착기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나) 가입대상 건설기계운전원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설기계운전원을 사용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피고용된 운전원'이 그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산재 적용을 받게 되며, 타인을 사용한 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임의가입하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타인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운전한 경우나 타인명의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② 적용제외신청 대응방법

건설기계운전원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보험료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기계운전원 스스로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의무적용 대상이므로 사업주가 산재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원은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운전원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나, 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직일부터 소급하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한편,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례가 늘면서 202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1. 7. 1.부터는 3가지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사자 스스로도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고 당연적용됩니다. 또, 2021. 7. 1. 이전에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경우라도 아래의 적용제외 사유 없이 제외된 경우에는 2021. 7. 1. 이후부터는 당연적용됩니다. 적용제외 신청 후 그 적용제외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제외 사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③ 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산정

가) 보험가입자

종래 원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와 그 운전원을 임대한 건설기계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2018. 1. 1. 고용노동부의 지침개정으로 '임대, 도급' 등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형식적으로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도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또, 레미콘 기사의 경우에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나)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며, 사업주는 건설기계운전원의 부담부분 50%를 임대료에서 원천공제합니다. 보험료는 건설기계운전원의 기준보수액(2021. 7. 7. 기준 2,479,444원)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현장에서 일한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사례 – 보험료 산정 방법

지게차 운전원이 4월 한달 동안 A현장에서 5일 일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월 산재보험료는?

⇨ (2,479,444원 × 5일/30일) × 산재보험료율 0.95% = 3,925원

Q&A

Q. 작은 건설현장에서 굴삭기로 땅을 파는 작업을 하고 운전석을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뎌 발목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청이 산재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A. 굴삭기 운전원과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며, 비록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Q. 레미콘 기사가 레미콘 회사 내에서 배차대기 중 차량정비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A.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 외에 레미콘 회사에서 배차 대기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레미콘 제조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레미콘 제조사는 재해당일 1일에 대한 입직신고 및 해당일 1일치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14) 고용노동부, 민원(1AA-1904-477917) 처리결과 안내, 산재보상정책과-2824, 2019. 6. 12.

Q. 레미콘 기사에 대하여 레미콘 제조회사에서 적용제외 신청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기사가 레미콘을 운반하는 A, B, C 건설현장 모두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되는건지요?

A. 건설기계운전원은 적용제외를 원하는 '건설현장'단위로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제외 신청한 현장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15) 고용노동부, 민원(1AA-1904-477917) 처리결과 안내, 산재보상정책과-2824, 2019. 6. 12.

Q. 덤프트럭 기사와 같이 오전에는 석산에서 골재를 운반하고, 오후에는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등 하루에 여러 업종의 현장을 오가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누가 되는지요?

A.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의 사업주이므로 덤프트럭 기사가 하루에 여러 현장을 오가는 경우 노무를 제공받은 각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가 노무를 제공받은 기간 동안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16) 고용노동부, 민원(1AA-1904-477917) 처리결과 안내, 산재보상정책과-2824, 2019. 6. 12.

7 퇴직금 및 퇴직공제제도

(1)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① 일용근로계약

일용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가 종료함과 동시에 근로계약도 자동해지 되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현장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121, 2010. 5. 27). 또, 건설사업주는 동일하나 여러 개의 건설현장을 사업주를 따라 옮겨 다닌 경우에도 모든 현장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942, 2007. 11. 27).

관련판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증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② 기간제근로계약

건설현장은 보통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1개월'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형식적으로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휴업이 발생한 경우

우천이나 공정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뜻하지 않은 휴업이 발생하여 근로일수가 적은 월이 발생할 수 있는데, 판례는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해당 월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마지막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 68207-735, 2001. 10. 26). 즉,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전부 합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사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가

단절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상당 기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판례는 대체로 2~3개월 이상 단절된 경우 계속 근로를 부정합니다.

관련판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판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사례 –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건설근로자 甲이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1. 1.부터 2021. 4. 31.까지 근무하였으나, 2020. 7.과 2020. 8.에 장마로 인하여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한 경우
  - 2020. 1. 1. ~ 2020. 1. 28.(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 4주 포함
  - 2020. 1. 29. ~ 2020. 2. 25.(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 4주 포함
  - … 같은 방식으로 4주 단위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 4주 포함, 15시간 미만 이면 해당 기간 4주 제외 …
- 甲은 2020. 1. 1. ~ 2021. 4. 31.까지 총 1년 4개월을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 도중에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4주를 제외하고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하여 1년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계속 근로 도중에 다른 현장에서 근로한 경우

건설현장은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강제 휴업이 발생하는데 이때 단기간 다른 현장으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 근로가 단절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942, 2007. 11. 27).

(2)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절차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한 현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다른 현장으로 옮겨 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계속근로 단절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청 출석 시 위에서 살펴 본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미리 산정하여 자료를 제출하면 진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3) 퇴직공제제도 17) 건설근로자공제회, 202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해설서, 2021. 3.

건설근로자는 여러 현장에 단기간으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의 노후를 대비하고 복지혜택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 앞으로 퇴직공제금 부담금을 적립하여두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최종 은퇴할 때 적립된 원금과 이자를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① 퇴직공제제도 적용 사업장

2020. 9. 8. 이후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 건설공사는 퇴직공제제도가 당연적용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이며, 예외적으로 하수급인이 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이 적립의무자로 됩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 입구나 사무실에 피공제자의 범위·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퇴직공제의 탈퇴 사실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제도 적용 건설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유형	구분	범위
공공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민자유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공주택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설공사	
민간공사	이외 제도가입 공사업의 적용을 받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표3 당연가입대상 공사

관련 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탈퇴 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1. 피공제자의 범위
2.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3.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4. 퇴직공제의 탈퇴 사실(퇴직공제에서 탈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② 공사원가 반영 및 사후정산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공제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밝혀야 합니다. 이는 저가낙찰 경쟁에 따라 영세한 건설업체가 퇴직공제 가입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건설사업주는 낙찰률에 상관없이 예정 가격에 계상된 퇴직공제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원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였는지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퇴직공제금 납부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 4대보험과 같이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금이 건설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사후정산’방식이 적용됩니다. 2020.5.27. 부터

퇴직공제금을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률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원수급인은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제2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③ 적립할 근로일수 산정 기준

퇴직공제 근로일수는 근로자의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당 1공수로 산정됩니다. 출력공수가 1.5일 등 소수자리인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근로일수를 1일로 신고합니다. 버린(0.5일)공수는 다른날 출력공수와 합하여 정수가 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또,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라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설사업주가 신고해야할 근무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퇴직공제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Tip.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확인방법

1. 공제회 대표번호 1666-1133을 통해 적립내역 확인
2. 공제회 하나로 서비스(1122.cwma.or.kr)에서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 후 확인
3. 공제회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확인

관련 법률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제2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할 것. 다만,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일의 경우에는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면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2.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2.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④ 피공제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에 발급된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자카드의 발급·재발급에 드는 기간,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해당하는 민감정보(공제가입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할 목적으로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

④ 퇴직공제부금 지급 요건

가) 퇴직공제 적용 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대상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적 국내 체류자격 소지자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공제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적용제외 근로자**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③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관련 법률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아래의 퇴직사유로 건설업을 퇴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 된 때에는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의 경우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는, 즉 최종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퇴사한 후 다른 현장 취업을 위해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고용의 종료상태 일 뿐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또, 2020. 5. 27. 이후 해당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때에도 유족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는 퇴직 사유**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은 온라인 또는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사유별 필요한 서류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 직접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시
– '20. 5. 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신분증 사본, 수령 받을 통장 사본
• 전화청구 콜센터 이용 시(1600-6582)
– '20. 5. 27. 전 적립금액이 30만원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배우자 유족에 한함

관련 법률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 〈개정 2019. 11.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⑤ 퇴직공제부금 미납 시 구제절차

가) 과태료

건설사업주가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020. 5. 27. 이전 위반 건은 100만원 이하, 2020. 5. 27. 이후 위반 건부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공제금 미납 시 벌칙규정은 없으나 수시로 건설근로자 본인의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를 확인하여 미납이 확인되는 즉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알려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독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관련 법률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근로일수 직접신고제

2020. 5. 27.부터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일수 직접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회는 사업주에게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해당 근로일수를 입력하고, 각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면 사업주는 퇴직공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일수 직접신고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에서 다운 가능하며,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FAX 접수가 가능합니다.

✷ **근로일수 직접신고 시 증명서류**

근로계약서, 출력일보, 임금대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소득금액 증명원(근로소득자용), 임금 입금내역 등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법률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③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 도급인 납부특례

2020. 5. 27.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하는 건설공사에 따른 공제부금부터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파산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예: 발주자)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는 도급인 납부특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알려 공제회로 하여금 도급인에게 납부고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도급인 납부특례 사유

1. 도급인이 사업주와 서면 합의한 경우
2.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3.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해당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2.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이 경우 도급인이 공제회에 내야하는 금액은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3.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의 공제부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타 근로자복지제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의 적립 및 지급 뿐만 아니라 단체보험·자녀장학금·건강검진·결혼출산지원금 등의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복지서비스 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건설기계(굴삭기, 레미콘 등) 운전원도 퇴직공제 가입대상인지요?

A. 퇴직공제금 제도의 근거법률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운전원은 퇴직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설기계 운전원이라도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그 현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인력수급정책과-3185, 2011. 10. 31).

Q. 건설근로자가 동일한 현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또, 1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사업주가 퇴직공제금을 계속 적립해야 하나요?

A. 2003. 7. 1. 이전에는 건설사업주가 퇴직공제금을 납부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 이 규정이 삭제되어 건설사업주는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중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동일한 현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1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습니다(인력수급정책과-3185, 2011. 10. 31).

Q. 저는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신용불량자이고 퇴직공제금 말고는 생활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퇴직공제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건설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을 하여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신협, 전북은행에서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하면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